|  |  |  |
| --- | --- | --- |
| **오염물질배출허가 관리방법 (시범시행)**  환경보호부령 제48호  <오염물질배출허가 관리방법 (시범시행)>이 2017년 11월 6일 환경보호부 부무회의 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보호부 부장 리간졔(李干杰)  2018년 1월 20일  제1장 총칙  제1조 오염물질배출허가 관리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 예방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및 국무원 판공청이 인쇄발부한 <오염물질배출통제허가제 실시방안>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신청, 심사•발급, 집행 및 오염물질배출허가와 관련된 감독관리, 처벌 등 행위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3조 환경보호부는 법에 의거하여 고정오염원 오염물질배출허가 분류관리 목록을 제정 및 공포함으로써 오염물질배출허가 관리 대상의 범위와 신청기한을 명확히 한다.  고정오염원 오염물질배출허가 분류관리 목록에 포함된 기업체•사업체와 기타 생산경영자(이하 '오염물질배출업체'로 약칭)는 규정된 신청기한에 따라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신청 및 취득하여야 한다. 고정오염원 오염물질배출허가 분류관리 목록에 수록되지 아니한 오염물질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신청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오염물질배출업체는 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오염물질을 배출함에 있어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오염물질 발생량•배출량이 크거나 환경위해성이 높은 오염물질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오염물질배출허가 중점관리를 시행하고 기타 오염물질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오염물질배출허가 간소화 관리를 시행한다.  오염물질배출허가 중점관리 또는 간소화 관리를 시행하는 오염물질배출업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정오염원 오염물질배출허가 분류관리 목록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점관리 및 간소화 관리의 내용과 범위는 이 방법 제11조에 규정한 오염물질배출허가 관련 기술규범•지침 등에 따라 집행한다.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 이상의 지방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오염물질배출허가 중점관리를 시행하는 오염물배출업체를 중점 오염물질배출업체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보호부는 전국의 오염물질배출허가제도 실시와 감독에 대한 지도를 담당한다. 각 성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오염물질배출허가제도 실시 및 감독을 담당한다.  오염물질배출업체 생산경영장소 소재지의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심사•발급을 담당한다. 지방성(地方性)법규에 심사•발급 권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동일 법인업체 또는 기타 조직에 소속되어 있고 상이한 생산경영장소에 위치해 있는 오염물질배출업체는 그가 소속되어 있는 법인업체 또는 기타 조직의 명의로 생산경영장소 소재지의 심사•발급권을 보유한 환경보호주관부서(이하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로 약칭)에 각각 별도로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생산경영장소와 배출구가 상이한 행정구역에 위치해 있을 경우 생산경영장소 소재지의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가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심사•발급하되 심사•발급 전에 그 배출구 소재지 동급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수질오염물질•대기오염물질 등 제반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하여 종합허가관리를 시행한다.  2015년 1월 1일 및 그 이후에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의견을 취득한 오염물질배출업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문건 및 심사비준의견에 기재된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주요내용을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보호부는 오염물질배출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오염물질배출업체와 그의 생산시설, 오염예방퇴치시설 및 배출구에 대하여 통일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제10조 환경보호부는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의 건설, 운영, 유지보수, 관리를 담당한다.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신청, 접수, 심사, 발급, 변경, 갱신, 말소, 취소, 분실재발급은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셀프 모니터링 정보, 집행보고서와 환경보호주관부서의 감독관리 집법(執法) 정보는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기록된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련 전자정보와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정본•부본은 법에 의거하여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11조 환경보호부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신청 및 심사•발급에 관한 기술규범, 환경관리대장(台账) 및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집행보고 기술규범, 오염물질배출업체 셀프 모니터링 기술지침, 오염예방퇴치 실현가능 기술지침 및 기타 오염물질배출허가 관련 정책, 표준 및 규범을 제정한다.  제2장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내용  제12조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구성된다. 정본에는 기본정보를 기재하고 부본에는 기본정보, 등기사항, 허가사항, 승낙서 등 내용을 기재한다.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 급 이상의 지방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지방성(地方性)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재항목을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증가할 수 있다.  제13조 다음 각 호의 기본정보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정본과 부본에 동시 기재되어야 한다.  (1) 오염물질배출업체의 명칭, 등록주조,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 기술책임자, 생산경영장소의 주소, 업종 유형, 통일사회신용코드 등 오염물질배출업체의 기본정보;  (2)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발급일자, 증서번호 및 QR코드 등 기본정보.  제14조 다음 각 호의 등기사항은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신고에 의해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부본에 기록한다.  (1) 주요 생산시설, 주요 제품 및 생산능력, 주요 원부재료 등;  (2) 오염물질 발생•배출 단계, 오염예방퇴치시설 등;  (3)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의견, 법에 의거하여 본 업체에 할당된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 오염물질배출권 유상사용•거래 기록 등.  제15조 다음 각 호의 허가사항은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신청에 의해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부본에 규정한다.  (1) 배출구의 위치와 수량, 오염물질 배출방식 및 배출방향 등;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원(排出源)의 위치와 수량;  (2) 배출구와 비산배출원(排出源)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허가배출농도, 허가배출량;  (3)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취득 후 준수하여야 하는 환경관리 요구사항;  (4)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 허가사항.  제16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국가와 지방의 오염물질배출기준에 근거하여 오염물질배출업체의 배출구 또는 비산배출원(排出源)을 통해 배출되는 해당 오염물질의 허가배출농도를 확정하여야 한다.  오염물질배출업체가 보다 엄격한 기준의 배출농도를 집행할 것을 승낙한 경우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부본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신청 및 심사•발급에 관한 기술규범에 규정된 업종별 중점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계산방법과 환경품질 개선 요구에 따라 오염물질배출업체의 허가배출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법에 의거하여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할당받은 오염물질배출업체의 경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업종별 중점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계산방법, 환경품질 개선 요구 및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에 근거하여 허가배출량을 엄격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2015년 1월 1일 및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의견을 취득한 업체로 환경영향평가문건 및 심사비준의견에 확정된 배출량이 본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허가배출량보다 엄격한 경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환경영향평가문건 및 심사비준의견의 요구에 근거하여 오염물질배출업체의 허가배출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지방 인민정부가 제정한 기한부 환경품질기준 도달 규획, 중오염 날씨 대응조치에서 오염물질배출업체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의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의 집행을 요구하고 있을 경우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부본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 방법이 실시된 후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규정된 허가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8조 다음 각 호의 환경관리 요구사항은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류, 관련 기술규범 및 감독관리 수요에 근거하여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가 확정한 후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부본에 규정한다.  (1) 오염예방퇴치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비산배출 통제 등에 관한 요구사항;  (2) 셀프 모니터링, 대장(台账)기록, 집행보고의 내용과 빈도 등에 관한 요구사항;  (3)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정보 공개에 관한 요구사항;  (4) 법률•법규에 규정한 기타 사항.  제19조 오염물질배출업체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신청 시 셀프 모니터링 기술지침에 따라 셀프 모티너링 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셀프 모니터링 방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니터링 위치와 설명도, 모니터링 지표, 모니터링 빈도;  (2)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분석방법, 견본 추출 방법;  (3) 모니터링 품질 보증 및 품질 통제에 관한 요구사항;  (4) 모니터링 데이터의 기록, 정리, 보관에 관한 요구사항.  제20조 오염물질배출업체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신청 시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신청서류의 온전성•진실성•합법성에 대한 승낙을 하여야 하며;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규정된 환경관리 요구사항을 실행할 것을 승낙하여야 한다. 승낙서에는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은 허가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최초로 발급되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은 3년간 유효하며 갱신발급된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은 5년간 유효하다.  국무원 경제종합거시통제부서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발표한 산업정책 목록에 수록된 탈락 예정 낙후 제조장비 또는 낙후 제품의 경우 그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계획된 탈락기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심사•발급하고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실시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신청 및 발급  제23조 성급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이 방법 제6조와 고정오염원 오염물질배출허가 분류관리 목록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신청을 접수하는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 신청절차 등 관련 사항을 확정하고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품질 개선 요구에 의거하여 일부 지역에서 일부 업종에 대한 오염물질배출허가 관리를 조기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성급 환경보주관부서는 실시하기 전에 환경보호부에 보고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고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고정오염원 오염물질배출허가 분류관리 목록에 정해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건설이 완료되어 실제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오염물질배출업체는 목록에 정해진 기한 내에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목록에 정해진 기한이 경과된 후 건설이 완료된 오염물질배출업체는 생산시설을 가동하거나 실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전에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 중점관리를 시행하는 오염물질배출업체는 오염물질배출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승낙서, 기본정보와 신청하고자 하는 허가사항을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방식은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 등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소한 5일(근무일 기준)간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 오염물질배출업체는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상에서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신청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을 통해 인쇄제작한 서면 신청서류를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신청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내용 : 오염물질배출업체의 기본정보; 주요 생산시설, 주요 제품 및 생산능력, 주요 원부재료; 폐기•폐수 등 오염물질 발생•배출 단계와 오염예방퇴치시설; 배출구 위치와 수량, 배출방식, 배출방향; 배출구와 생산시설 또는 작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종류, 배출농도와 배출량; 집행하는 배출기준;  (2) 셀프 모니터링 방안;  (3) 오염물질배출업체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승낙서;  (4)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오염물질 배출구 규범화에 관한 상황설명서;  (5) 건설 프로젝트 환겨영향평가문건의 심사비준번호,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 인민정부의 법에 의거한 처리, 규범화 정돈을 거쳐 요구에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신청 전 정보공개 상황 설명표;  (7) 오수집중처리시설 경영관리업체는 오수 수용범위, 오수 수용•배출업체 명단, 배관망 배치 상황, 최종 배출방향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8) 이 방법이 실시된 후 신축•개축•증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오염물질배출업체로 오염물질 배출량의 등량 또는 감량 교체•삭감을 통해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획득하였고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양도한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이미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양도한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변경 수속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9) 법률•법규•규장에 규정된 기타 서류.  주요 생산시설, 주요 제품 및 생산능력 등 등기사항이 상업비밀과 연관된 경우 오염물질배출업체는 비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후 서류의 온전성•규범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이 방법에 따를 때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취득이 필요없을 경우 현장 즉석에서 또는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취득이 필요없음을 오염물질배출업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본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장 즉석에서 또는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불접수 결정을 내리고 심사•발급 권한이 있는 부서에 신청해야 함을 오염물질배출업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장 즉석에서 또는 5일(근무일 기준) 내에 고지서를 발행하여 보정이 필요한 전부 내용을 오염물질배출업체게 고지하여야 하며 현장 즉석에서 정정이 가능한 경우 오염물질배출업체가 현장 즉석에서 정정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4) 본 행정기관의 직권에 속하며 규정에 부합되는 신청서류가 완비되었거나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요구에 따라 보정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상에서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오염물질배출업체에게 본 행정기관의 전용 인장이 날인되었고 일자가 기재된 접수증 또는 불접수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가 오염물질배출업체에게 보정이 필요한 서류를 고지하여야 하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서면 심청서류 접수일에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1) 법률•법규에 의해 건설이 금지된 구역 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  (2) 국무원 경제종합거시통제부서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발표한 산업정책 목록에 수록된 탈락 예정 또는 즉시 탈락 낙후 제조장비 또는 낙후 제품에 속하는 경우;  (3)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를 때 불허가하는 것이 마땅한 기타의 경우.  제29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오염물질배출업체에게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법에 의거하여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의견을 취득하였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 인민정부의 법에 의거한 처리, 규범화 정돈을 거쳐 요구에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취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2) 채택한 오염예방퇴치시설 또는 조치를 통해 허가배출농도 요구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3) 배출농도가 이 방법 제16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배출량이 이 방법 제17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4) 셀프 모니터링 방안이 관련 기술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5) 이 방법이 실시된 후 신축•개축•증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오염물질배출업체로 오염물질 배출량의 등량 또는 감량 교체•삭감을 통해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획득한 경우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양도한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변경 수속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어야 한다.  제30조 해당 오염예방퇴치 실현가능 기술을 채택하였거나 신축•개축•증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오염물질배출업체가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의견에서 요구한 오염퇴치 기술을 채택한 경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채택한 오염예방퇴치시설 또는 조치를 통해 허가배출농도 요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 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오염물질배출업체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다. 모니터링 데이터는 국가의 환경 모니터링, 계량 인증에 관한 규정 및 기술규범에 부합되는 모니터링 설비를 통해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국내에서 최초로 채택된 오염퇴치 기술의 경우 공학적 시험 데이터를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환경보호부는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집행 상황에 의거하여 적시에 오염예방퇴치 실현가능 기술 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  제31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허가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오염물질배출업체에게 본 행정기관의 공인이 날인된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가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 경우 본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근무일 기준)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 연장 이유를 오염물질배출업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청문, 검사, 검측 및 전문가평가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해당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 조에 규정한 기한 내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소요기간을 서면으로 오염물질배출업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2조 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정본과 부본에 기재된 기본정보, 허가사항 및 승낙서를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공고하여야 한다.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불허가결정서를 제작하여 불허가 이유와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 서면으로 오염물질배출업체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실시와 감독관리  제33조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가필하는 것을 금지한다. 임대, 대여, 매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불법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오염물질배출업체는 생산경영장소 내 대중이 감독하기 펴리한 위치에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정본을 걸어놓아야 한다.  제34조 오염물질배출업체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환경 모니터링, 계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는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시설에 대한 정기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셀프 모니터링을 진행하여야 하며 원시 모니터링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오염물질배출허가 중점관리를 실시하는 오염물질배출업체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고 환경보호주관부서의 감시통제 설비와 연결시켜야 한다.  오염예방퇴치 실현가능 기술을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 셀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오염예방퇴치 기술에 대한 기준 도달 가능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오염물질배출업체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대장(台账)기록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생산 특성과 오염물질 배출 특징에 근거하여 오염물질 배출구 또는 비산배출원(排出源)별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록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주요 생산시설의 운영 상황;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취한 조치를 기록하여야 함;  (2) 오염예방퇴치시설 운영 상황 및 관리정보;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취한 조치를 기록하여야 함;  (3) 오염물질 배출농도와 배출량; 기준초과 배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준초과 원인과 취한 조치를 기록하여야 함;  (4) 관련 기술규범에 따라 응당히 기록하여야 하는 기타 정보.  대장(台账)기록은 최소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 오염물질 실제 배출량은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규정된 폐기•오수 배출구, 생산시설 또는 작업장별로 각각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법에 따라 국가의 규정과 모니터링 규범에 부합되는 오염물질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오염물질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2) 오염물질 자동 모니터링 설비 설치에 대한 법적 요구가 없을 경우 국가의 규정과 모니터링 규범에 부합되는 오염물질 수동 모니터링 데이터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3) 법에 따라 오염물질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오염물질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한 오염물질 자동 모니터링 설비가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본 조 제(1)호, 제(2)호에 규정한 방식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환경보호부가 규정한 오염물질 발생•배출 계수, 물질수지법에 따라 계산한다.  제37조 오염물질배출업체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규정된 집행보고 내용 및 빈도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집행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집행보고서는 연간 집행보고서, 분기별 집행보고서 및 월간 집행보고서를 포함한다.  오염물질배출업체는 매년마다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상에서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연간 집행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을 통해 인쇄제작한 서면 집행보고서를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 집행보고서에는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분기별 집행보고서와 월간 집행보고서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셀프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한 오염물질 실제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대한 설명내용과 기준도달 여부에 대한 판정 및 분석;  (2) 오염물질배출업체의 기준초과 배출 또는 오염예방퇴치시설 이상 상황에 대한 설명.  연간 집행보고서는 분기별 집행보고서 또는 월간 집행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물질배출업체의 기본 생산정보;  (2) 오염예방퇴치시설 운영 상황;  (3) 셀프 모니터링 집행 상황;  (4) 환경관리대장(台账)기록 집행 상황;  (5) 정보 공개 상황;  (6) 오염물질배출업체의 내부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상황;  (7)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규정된 기타 내용의 집행 상황 등.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 준공검수 보고서상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오염물질배출업체가 해당 프로젝트 검수 완료 연도의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연간 집행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 사고가 발생한 오염물질배출업체는 관련 법률•법규•규장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오염물질배출업체는 그가 제출하는 대장(台账)기록, 모니터링 데이터 및 집행보고서의 진실성•온전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법에 따라 환경보호주관부서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집법(執法)계획을 수립하고 오염물질배출업체의 환경신용기록과 결부시켜 집법(執法) 중점 감독관리 대상과 검사 빈도를 확정하여야 한다.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오염물질배출업체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규정된 허가사항의 실시 상황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집법(執法) 모니터링, 대장(台账)기록과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한 확인검사 및 기타 감시통제 수단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배출 데이터와 집행보고서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허가배출농도 및 허가배출량 부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환경관리 요구사항 실시 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현장검사의 시간, 내용, 결과 및 처벌결정을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관리 집법(執法) 정보와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거나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규정을 어기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오염물질배출업체의 명단을 법에 의거하여 전국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0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정부가 서비스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기술기구를 조직하거나 기술기구에 의뢰하여 오염물질배출허가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기술기구는 그가 제출하는 기술보고서에 대하여 채임져야 하며 오염물질배출업체로부터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 상급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심사•발급 권한을 보유한 하급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심사•발급 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지도할 수 있으며 이 방법 제49조에 규정한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상급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42조 사회대중•언론매체 등이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감독하는 것을 격려한다. 오염물질배출업체는 적시에 오염물질 배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자발적으로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이 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은 환경보호주관부서에 제보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로 해야 한다.  제5장 변경, 갱신과 취소  제43조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 오염물질배출업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오염물질배출업체는 규정된 시간 내에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에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염물질배출업체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 등 정본에 기재된 기본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원인으로 인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기 전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오염물질배출업체가 기존 사이트에서 실시하는 신축•개축•증축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사비준의견을 취득한 후 오염물질 배출 행위가 변경되기 전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새로 제개정된 경우 그 배출기준이 실시되기 전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법에 의거하여 할당받은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변화 발생 후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지방 인민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 기한부 기준도달 규획이 실시되기 전 30일(근무일 기준) 내;  (7) 지방 인민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제정한 중오염 날씨 긴급대응방안이 실시된 경우 실시 후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8) 법률•법규에 정해진 변경 수속이 필요한 기타의 경우.  본 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오염물질 배출량의 등량 또는 감량 교체•삭감을 통해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획득한 경우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변경 신청을 제출하기에 앞서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양도한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우선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변경 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4조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변경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염물질배출허가증 변경 신청서;  (2) 오염물질배출업체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승낙서;  (3) 오염물배출허가증 정본의 복사본;  (4) 변경된 오염물질배출허가 사항과 관련된 기타 서류.  제45조 심사•발급 환경보호부서는 변경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부본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본 행정기관의 공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방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정본을 교체발급하여야 한다.  이 방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기존 증서의 발급일로부터 기산한다. 이 방법 제43조 제2항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변경 후의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변경일로부터 기산한다.  이 방법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방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한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6조 오염물질배출업체가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근무일) 전에 기존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갱신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염물질배출허가증 갱신 신청서;  (2) 오염물질배출업체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승낙서;  (3) 오염물배출허가증 정본의 복사본;  (4) 갱신하고자 하는 오염물질배출허가 사항과 연관된 기타 서류.  제48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이 방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갱신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갱신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갱신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갱신 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오염물질배출업체에게 본 행정기관의 공인이 날인된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기존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 또는 그의 상급 행정기관은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공고할 수 있다.  (1)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발급함에 있어 법에 정해진 직권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발급함에 있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발급함에 있어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의 업무인력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4) 신청 자격이 없거나 법에 정해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인에게 행정허가를 해준 경우;  (5) 법에 의거하여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취소가 가능한 기타의 경우.  제5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 또는 그의 상급 행정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말소 처리하고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갱신이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2) 오염물질배출업체가 법에 의거하여 종료된 경우;  (3) 응당히 말소하여야 하는 기타의 경우.  제51조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이 분실•훼손된 경우 오염물질배출업체는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에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이 분실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기에 앞서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분실 공고를 발표하여야 하며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재발급 신청을 접수한 후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하며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52조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신청 접수, 심사•발급 및 감독관리 집법(執法)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그의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법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한 주관인력 또는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접수 조건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 조건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발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발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발급을 허가하거나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발급함에 있어 법에 정해진 직권을 벗어난 경우;  (4)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무단으로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5) 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허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법에 따라 감독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7) 법에 의거하여 응당히 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는 기타의 경우.  제53조 오염물질배출업체가 행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관련 상황을 은폐하거나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해당 신청을 불접수하거나 행정허가를 거절하고 경고를 준다.  제54조 이 방법 제43조의 규정을 어기고 적시에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이 방법 제51조의 규정을 어기고 적시에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재발급받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가 시정을 명한다.  제55조 중점 오염물질배출업체가 법에 따라 관련 환경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서가 공개를 명하고 법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며 해당 사실을 공고한다.  제56조 이 방법 제34조를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 예방퇴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을 명하고 2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조업중단•정돈을 명한다.  (1) 배출하는 공업폐가스와 유독•유해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법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원시 모니터링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주관부서의 감시통제 설비와 연결시키지 아니하거나 모니터링 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7조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 예방퇴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생산제한, 조업중단•정돈을 명하고 1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득한 후 휴업•폐쇠를 명한다.  (1) 법에 의거하여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신청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 후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갱신 신청 후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의 허가가 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 법에 의거하여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취소당한 후 계속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4) 법률•법규에 규정한 기타의 경우.  제58조 오염물질배출업체가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위반 행위를 행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 예방퇴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생산제한, 조업중단•정돈을 명하고 1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득한 후 휴업•폐쇠를 명한다.  (1)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점 대기오염물질, 중점 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몰래 배출, 모니터링 데이터 변조 또는 위조, 현장검사 도피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 조업중단, 비(非) 긴급상황에서 비상 배출 통로 가동, 대기오염 예방퇴치시설 비정상적 작동 등 감독관리를 도피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 침투정(渗井)•침투갱(渗坑)•지면균열•동굴 이용, 암관(暗管) 무단설치, 모니터링 데이터 변조•위조 또는 수질오염 예방퇴치시설 비정상적 작동 등 감독관리를 도피하는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4)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규정에 위배되는 기타 오염물질 배출 행위.  제59조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고 시정을 명받은 오염물질배출업체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재검사를 실시한다. 재검사에서 해당 업체가 계속해서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해당 업체가 재검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시정을 명한 다음 날부터 기존 처벌액수에 따라 일단위로 연속 처벌할 수 있다.  제60조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이 방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37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이상 상황이 발생한 후 적시에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고 주동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위법행위의 위해성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킨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가볍게 처벌하여야 한다.  오염물질배출업체는 해당 분기 집행보고서 또는 월간 집행보고서에 본 조 제1항의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장 부칙  제61조 이 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조업•운영을 개시하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하는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이 방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정을 승낙하고 시정방안을 제출한 경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해당 업체에게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되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해당 문제점을 기재하고 그가 승낙한 시정내용과 시정기한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이 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추진한 신축•개축•증축 프로젝트가 이 방법 제29조 제(1)호의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 방법 제29조 제(2)호의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방법 제29조 제(1)호의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배출업체에 대하여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가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하여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과징금을 병과한다.  이 방법 제29조 제(2)호의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배출업체체 대하여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제99조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 예방퇴치법> 제83조에 의거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생산제한, 조업중단•정돈을 명하고 과징금을 병과한다.  본 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의 시정명령 또는 생산제한, 조업중단•정돈 명령의 내용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규정된 시정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본 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가 명한 시정기한 또는 생산제한, 조업중단•정돈의 기한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규정된 시정기한과 그 시작일•마지막일이 일치하여야 한다.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규정하는 시정기한은 3~6개월로 하되 최장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시정기간 또는 생산제한, 조업중단•정돈 기간에 오염물질배출업체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셀프 모니터링, 대장(台账)기록 및 집행보고 제도를 집행하여야 하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62조 이 방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규정한 시정기한이 만료되었고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시정 임무를 완성하였거나 조기 완성한 경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에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이 방법 제5장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방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규정한 시정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여전히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제99조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 예방퇴치법> 제83조 또는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의를 제시하여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득한 후 휴업•폐쇠를 명하며 이와 더불어 이 방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말소 처리한다.  제63조 이 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지방성(地方性)법규에 의거하여 발급된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이 아직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경우 기존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심사•발급 담당 환경보호부서는 전국 오염물질배출허가증 관리정보 플랫폼상에서 데이터를 작성하여 오염물배출허가증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오염물질배출업체는 이 방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4조 이 방법 제12조에 규정한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양식, 이 방법 제20조에 규정한 승낙서의 양식 및 이 방법 제26조에 규정한 오염물질배출허가증 신청표의 양식은 환경보호부가 제정한다.  제65조 이 방법에서 오염물질배출허가라 함은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오염물질배출업체의 신청과 승낙에 근거하여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발급하는 형식을 통해 법률•법규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규제하고 환경관리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며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근거하여 오염물질배출업체에 대한 감독관리 집법(執法)을 실시하는 환경관리제도를 지칭한다.  제66조 이 방법에서 주요책임자라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비(非)법인업체를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를 지칭한다.  제67조 국가기밀을 다루는 오염물질배출업체의 경우 그의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신청, 접수, 심사, 발급, 변경, 갱신, 말소, 취소, 분실재발급은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68조 이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  | **排污许可管理办法（试行）**  环境保护部令第48号  　　《排污许可管理办法（试行）》已于2017年11月6日由环境保护部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环境保护部部长 李干杰  　　2018年1月10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排污许可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以及国务院办公厅印发的《控制污染物排放许可制实施方案》，制定本办法。  　　第二条 排污许可证的申请、核发、执行以及与排污许可相关的监管和处罚等行为，适用本办法。  　　第三条 环境保护部依法制定并公布固定污染源排污许可分类管理名录，明确纳入排污许可管理的范围和申领时限。  　　纳入固定污染源排污许可分类管理名录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以下简称排污单位）应当按照规定的时限申请并取得排污许可证；未纳入固定污染源排污许可分类管理名录的排污单位，暂不需申请排污许可证。  　　第四条 排污单位应当依法持有排污许可证，并按照排污许可证的规定排放污染物。  应当取得排污许可证而未取得的，不得排放污染物。  　　第五条 对污染物产生量大、排放量大或者环境危害程度高的排污单位实行排污许可重点管理，对其他排污单位实行排污许可简化管理。  　　实行排污许可重点管理或者简化管理的排污单位的具体范围，依照固定污染源排污许可分类管理名录规定执行。实行重点管理和简化管理的内容及要求，依照本办法第十一条规定的排污许可相关技术规范、指南等执行。  　　设区的市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将实行排污许可重点管理的排污单位确定为重点排污单位。  　　第六条 环境保护部负责指导全国排污许可制度实施和监督。各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排污许可制度的组织实施和监督。  　　排污单位生产经营场所所在地设区的市级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排污许可证核发。地方性法规对核发权限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七条 同一法人单位或者其他组织所属、位于不同生产经营场所的排污单位，应当以其所属的法人单位或者其他组织的名义，分别向生产经营场所所在地有核发权的环境保护主管部门（以下简称核发环保部门）申请排污许可证。  　　生产经营场所和排放口分别位于不同行政区域时，生产经营场所所在地核发环保部门负责核发排污许可证，并应当在核发前，征求其排放口所在地同级环境保护主管部门意见。  　　第八条 依据相关法律规定，环境保护主管部门对排污单位排放水污染物、大气污染物等各类污染物的排放行为实行综合许可管理。  　　2015年1月1日及以后取得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审批意见的排污单位，环境影响评价文件及审批意见中与污染物排放相关的主要内容应当纳入排污许可证。  　　第九条 环境保护部对实施排污许可管理的排污单位及其生产设施、污染防治设施和排放口实行统一编码管理。  　　第十条 环境保护部负责建设、运行、维护、管理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  　　排污许可证的申请、受理、审核、发放、变更、延续、注销、撤销、遗失补办应当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进行。排污单位自行监测、执行报告及环境保护主管部门监管执法信息应当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记载，并按照本办法规定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公开。  　　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中记录的排污许可证相关电子信息与排污许可证正本、副本依法具有同等效力。  　　第十一条 环境保护部制定排污许可证申请与核发技术规范、环境管理台账及排污许可证执行报告技术规范、排污单位自行监测技术指南、污染防治可行技术指南以及其他排污许可政策、标准和规范。  第二章 排污许可证内容  　　第十二条 排污许可证由正本和副本构成，正本载明基本信息，副本包括基本信息、登记事项、许可事项、承诺书等内容。  　　设区的市级以上地方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根据环境保护地方性法规，增加需要在排污许可证中载明的内容。  　　第十三条 以下基本信息应当同时在排污许可证正本和副本中载明：  　　（一）排污单位名称、注册地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技术负责人、生产经营场所地址、行业类别、统一社会信用代码等排污单位基本信息；  　　（二）排污许可证有效期限、发证机关、发证日期、证书编号和二维码等基本信息。  　　第十四条 以下登记事项由排污单位申报，并在排污许可证副本中记录：  　　（一）主要生产设施、主要产品及产能、主要原辅材料等；  　　（二）产排污环节、污染防治设施等；  　　（三）环境影响评价审批意见、依法分解落实到本单位的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排污权有偿使用和交易记录等。  　　第十五条 下列许可事项由排污单位申请，经核发环保部门审核后，在排污许可证副本中进行规定：  　　（一）排放口位置和数量、污染物排放方式和排放去向等，大气污染物无组织排放源的位置和数量；  　　（二）排放口和无组织排放源排放污染物的种类、许可排放浓度、许可排放量；  　　（三）取得排污许可证后应当遵守的环境管理要求；  　　（四）法律法规规定的其他许可事项。  　　第十六条 核发环保部门应当根据国家和地方污染物排放标准，确定排污单位排放口或者无组织排放源相应污染物的许可排放浓度。  　　排污单位承诺执行更加严格的排放浓度的，应当在排污许可证副本中规定。  　　第十七条 核发环保部门按照排污许可证申请与核发技术规范规定的行业重点污染物允许排放量核算方法，以及环境质量改善的要求，确定排污单位的许可排放量。  　　对于本办法实施前已有依法分解落实到本单位的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的排污单位，核发环保部门应当按照行业重点污染物允许排放量核算方法、环境质量改善要求和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从严确定许可排放量。  　　2015年1月1日及以后取得环境影响评价审批意见的排污单位，环境影响评价文件和审批意见确定的排放量严于按照本条第一款、第二款确定的许可排放量的，核发环保部门应当根据环境影响评价文件和审批意见要求确定排污单位的许可排放量。  　　地方人民政府依法制定的环境质量限期达标规划、重污染天气应对措施要求排污单位执行更加严格的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的，应当在排污许可证副本中规定。  　　本办法实施后，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按照排污许可证规定的许可排放量，确定排污单位的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  　　第十八条 下列环境管理要求由核发环保部门根据排污单位的申请材料、相关技术规范和监管需要，在排污许可证副本中进行规定：  　　（一）污染防治设施运行和维护、无组织排放控制等要求；  　　（二）自行监测要求、台账记录要求、执行报告内容和频次等要求；  　　（三）排污单位信息公开要求；  　　（四）法律法规规定的其他事项。  　　第十九条 排污单位在申请排污许可证时，应当按照自行监测技术指南，编制自行监测方案。  自行监测方案应当包括以下内容：  　　（一）监测点位及示意图、监测指标、监测频次；  　　（二）使用的监测分析方法、采样方法；  　　（三）监测质量保证与质量控制要求；  　　（四）监测数据记录、整理、存档要求等。  　　第二十条 排污单位在填报排污许可证申请时，应当承诺排污许可证申请材料是完整、真实和合法的；承诺按照排污许可证的规定排放污染物，落实排污许可证规定的环境管理要求，并由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签字或者盖章。  　　第二十一条 排污许可证自作出许可决定之日起生效。首次发放的排污许可证有效期为三年，延续换发的排污许可证有效期为五年。  　　对列入国务院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发布的产业政策目录中计划淘汰的落后工艺装备或者落后产品，排污许可证有效期不得超过计划淘汰期限。  　　第二十二条 环境保护主管部门核发排污许可证，以及监督检查排污许可证实施情况时，不得收取任何费用。  第三章 申请与核发  　　第二十三条 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根据本办法第六条和固定污染源排污许可分类管理名录，确定本行政区域内负责受理排污许可证申请的核发环保部门、申请程序等相关事项，并向社会公告。  　　依据环境质量改善要求，部分地区决定提前对部分行业实施排污许可管理的，该地区省级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报环境保护部备案后实施，并向社会公告。  　　第二十四条 在固定污染源排污许可分类管理名录规定的时限前已经建成并实际排污的排污单位，应当在名录规定时限申请排污许可证；在名录规定的时限后建成的排污单位，应当在启动生产设施或者在实际排污之前申请排污许可证。  　　第二十五条 实行重点管理的排污单位在提交排污许可申请材料前，应当将承诺书、基本信息以及拟申请的许可事项向社会公开。公开途径应当选择包括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等便于公众知晓的方式，公开时间不得少于五个工作日。  　　第二十六条 排污单位应当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填报并提交排污许可证申请，同时向核发环保部门提交通过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印制的书面申请材料。  　　申请材料应当包括：  　　（一）排污许可证申请表，主要内容包括：排污单位基本信息，主要生产设施、主要产品及产能、主要原辅材料，废气、废水等产排污环节和污染防治设施，申请的排放口位置和数量、排放方式、排放去向，按照排放口和生产设施或者车间申请的排放污染物种类、排放浓度和排放量，执行的排放标准；  　　（二）自行监测方案；  　　（三）由排污单位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签字或者盖章的承诺书；  　　（四）排污单位有关排污口规范化的情况说明；  　　（五）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审批文号，或者按照有关国家规定经地方人民政府依法处理、整顿规范并符合要求的相关证明材料；  　　（六）排污许可证申请前信息公开情况说明表；  　　（七）污水集中处理设施的经营管理单位还应当提供纳污范围、纳污排污单位名单、管网布置、最终排放去向等材料；  　　（八）本办法实施后的新建、改建、扩建项目排污单位存在通过污染物排放等量或者减量替代削减获得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情况的，且出让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的排污单位已经取得排污许可证的，应当提供出让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的排污单位的排污许可证完成变更的相关材料；  　　（九）法律法规规章规定的其他材料。  　　主要生产设施、主要产品产能等登记事项中涉及商业秘密的，排污单位应当进行标注。  　　第二十七条 核发环保部门收到排污单位提交的申请材料后，对材料的完整性、规范性进行审查，按照下列情形分别作出处理：  　　（一）依照本办法不需要取得排污许可证的，应当当场或者在五个工作日内告知排污单位不需要办理；  （二）不属于本行政机关职权范围的，应当当场或者在五个工作日内作出不予受理的决定，并告知排污单位向有核发权限的部门申请；  　　（三）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规定的，应当当场或者在五个工作日内出具告知单，告知排污单位需要补正的全部材料，可以当场更正的，应当允许排污单位当场更正；  　　（四）属于本行政机关职权范围，申请材料齐全、符合规定，或者排污单位按照要求提交全部补正申请材料的，应当受理。  　　核发环保部门应当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作出受理或者不予受理排污许可证申请的决定，同时向排污单位出具加盖本行政机关专用印章和注明日期的受理单或者不予受理告知单。  　　核发环保部门应当告知排污单位需要补正的材料，但逾期不告知的，自收到书面申请材料之日起即视为受理。  　　第二十八条 对存在下列情形之一的，核发环保部门不予核发排污许可证：  　　（一）位于法律法规规定禁止建设区域内的；  　　（二）属于国务院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发布的产业政策目录中明令淘汰或者立即淘汰的落后生产工艺装备、落后产品的；  　　（三）法律法规规定不予许可的其他情形。  　　第二十九条 核发环保部门应当对排污单位的申请材料进行审核，对满足下列条件的排污单位核发排污许可证：  　　（一）依法取得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审批意见，或者按照有关规定经地方人民政府依法处理、整顿规范并符合要求的相关证明材料；  　　（二）采用的污染防治设施或者措施有能力达到许可排放浓度要求；  　　（三）排放浓度符合本办法第十六条规定，排放量符合本办法第十七条规定；  　　（四）自行监测方案符合相关技术规范；  　　（五）本办法实施后的新建、改建、扩建项目排污单位存在通过污染物排放等量或者减量替代削减获得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情况的，出让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的排污单位已完成排污许可证变更。  　　第三十条 对采用相应污染防治可行技术的，或者新建、改建、扩建建设项目排污单位采用环境影响评价审批意见要求的污染治理技术的，核发环保部门可以认为排污单位采用的污染防治设施或者措施有能力达到许可排放浓度要求。  　　不符合前款情形的，排污单位可以通过提供监测数据予以证明。监测数据应当通过使用符合国家有关环境监测、计量认证规定和技术规范的监测设备取得；对于国内首次采用的污染治理技术，应当提供工程试验数据予以证明。  　　环境保护部依据全国排污许可证执行情况，适时修订污染防治可行技术指南。  　　第三十一条 核发环保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二十个工作日内作出是否准予许可的决定。自作出准予许可决定之日起十个工作日内，核发环保部门向排污单位发放加盖本行政机关印章的排污许可证。  　　核发环保部门在二十个工作日内不能作出决定的，经本部门负责人批准，可以延长十个工作日，并将延长期限的理由告知排污单位。  　　依法需要听证、检验、检测和专家评审的，所需时间不计算在本条所规定的期限内。核发环保部门应当将所需时间书面告知排污单位。  　　第三十二条 核发环保部门作出准予许可决定的，须向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提交审核结果，获取全国统一的排污许可证编码。  　　核发环保部门作出准予许可决定的，应当将排污许可证正本以及副本中基本信息、许可事项及承诺书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公告。  　　核发环保部门作出不予许可决定的，应当制作不予许可决定书，书面告知排污单位不予许可的理由，以及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权利，并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公告。  第四章 实施与监管  　　第三十三条 禁止涂改排污许可证。禁止以出租、出借、买卖或者其他方式非法转让排污许可证。排污单位应当在生产经营场所内方便公众监督的位置悬挂排污许可证正本。  　　第三十四条 排污单位应当按照排污许可证规定，安装或者使用符合国家有关环境监测、计量认证规定的监测设备，按照规定维护监测设施，开展自行监测，保存原始监测记录。  　　实施排污许可重点管理的排污单位，应当按照排污许可证规定安装自动监测设备，并与环境保护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  　　对未采用污染防治可行技术的，应当加强自行监测，评估污染防治技术达标可行性。  　　第三十五条 排污单位应当按照排污许可证中关于台账记录的要求，根据生产特点和污染物排放特点，按照排污口或者无组织排放源进行记录。记录主要包括以下内容：  　　（一）与污染物排放相关的主要生产设施运行情况；发生异常情况的，应当记录原因和采取的措施；  　　（二）污染防治设施运行情况及管理信息；发生异常情况的，应当记录原因和采取的措施；  　　（三）污染物实际排放浓度和排放量；发生超标排放情况的，应当记录超标原因和采取的措施；  　　（四）其他按照相关技术规范应当记录的信息。  　　台账记录保存期限不少于三年。  　　第三十六条 污染物实际排放量按照排污许可证规定的废气、污水的排污口、生产设施或者车间分别计算，依照下列方法和顺序计算：  　　（一）依法安装使用了符合国家规定和监测规范的污染物自动监测设备的，按照污染物自动监测数据计算；  　　（二）依法不需安装污染物自动监测设备的，按照符合国家规定和监测规范的污染物手工监测数据计算；  （三）不能按照本条第一项、第二项规定的方法计算的，包括依法应当安装而未安装污染物自动监测设备或者自动监测设备不符合规定的，按照环境保护部规定的产排污系数、物料衡算方法计算。  　　第三十七条 排污单位应当按照排污许可证规定的关于执行报告内容和频次的要求，编制排污许可证执行报告。  　　排污许可证执行报告包括年度执行报告、季度执行报告和月执行报告。  　　排污单位应当每年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填报、提交排污许可证年度执行报告并公开，同时向核发环保部门提交通过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印制的书面执行报告。书面执行报告应当由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签字或者盖章。  　　季度执行报告和月执行报告至少应当包括以下内容：  　　（一）根据自行监测结果说明污染物实际排放浓度和排放量及达标判定分析；  　　（二）排污单位超标排放或者污染防治设施异常情况的说明。  　　年度执行报告可以替代当季度或者当月的执行报告，并增加以下内容：  　　（一）排污单位基本生产信息；  　　（二）污染防治设施运行情况；  　　（三）自行监测执行情况；  　　（四）环境管理台账记录执行情况；  　　（五）信息公开情况；  　　（六）排污单位内部环境管理体系建设与运行情况；  　　（七）其他排污许可证规定的内容执行情况等。  　　建设项目竣工环境保护验收报告中与污染物排放相关的主要内容，应当由排污单位记载在该项目验收完成当年排污许可证年度执行报告中。  　　排污单位发生污染事故排放时，应当依照相关法律法规规章的规定及时报告。  　　第三十八条 排污单位应当对提交的台账记录、监测数据和执行报告的真实性、完整性负责，依法接受环境保护主管部门的监督检查。  　　第三十九条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制定执法计划，结合排污单位环境信用记录，确定执法监管重点和检查频次。  　　环境保护主管部门对排污单位进行监督检查时，应当重点检查排污许可证规定的许可事项的实施情况。通过执法监测、核查台账记录和自动监测数据以及其他监控手段，核实排污数据和执行报告的真实性，判定是否符合许可排放浓度和许可排放量，检查环境管理要求落实情况。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将现场检查的时间、内容、结果以及处罚决定记入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依法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公布监管执法信息、无排污许可证和违反排污许可证规定排污的排污单位名单。  　　第四十条 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通过政府购买服务的方式，组织或者委托技术机构提供排污许可管理的技术支持。  　　技术机构应当对其提交的技术报告负责，不得收取排污单位任何费用。  　　第四十一条 上级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对具有核发权限的下级环境保护主管部门的排污许可证核发情况进行监督检查和指导，发现属于本办法第四十九条规定违法情形的，上级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依法撤销。  　　第四十二条 鼓励社会公众、新闻媒体等对排污单位的排污行为进行监督。排污单位应当及时公开有关排污信息，自觉接受公众监督。  　　公民、法人和其他组织发现排污单位有违反本办法行为的，有权向环境保护主管部门举报。  　　接受举报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依法处理，并按照有关规定对调查结果予以反馈，同时为举报人保密。  第五章 变更、延续、撤销  　　第四十三条 在排污许可证有效期内，下列与排污单位有关的事项发生变化的，排污单位应当在规定时间内向核发环保部门提出变更排污许可证的申请：  　　（一）排污单位名称、地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等正本中载明的基本信息发生变更之日起三十个工作日内；  　　（二）因排污单位原因许可事项发生变更之日前三十个工作日内；  　　（三）排污单位在原场址内实施新建、改建、扩建项目应当开展环境影响评价的，在取得环境影响评价审批意见后，排污行为发生变更之日前三十个工作日内；  　　（四）新制修订的国家和地方污染物排放标准实施前三十个工作日内；  　　（五）依法分解落实的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发生变化后三十个工作日内；  　　（六）地方人民政府依法制定的限期达标规划实施前三十个工作日内；  　　（七）地方人民政府依法制定的重污染天气应急预案实施后三十个工作日内；  　　（八）法律法规规定需要进行变更的其他情形。  　　发生本条第一款第三项规定情形，且通过污染物排放等量或者减量替代削减获得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的，在排污单位提交变更排污许可申请前，出让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的排污单位应当完成排污许可证变更。  　　第四十四条 申请变更排污许可证的，应当提交下列申请材料：  　　（一）变更排污许可证申请；  　　（二）由排污单位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签字或者盖章的承诺书；  　　（三）排污许可证正本复印件；  　　（四）与变更排污许可事项有关的其他材料。  　　第四十五条 核发环保部门应当对变更申请材料进行审查，作出变更决定的，在排污许可证副本中载明变更内容并加盖本行政机关印章，同时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公告；属于本办法第四十三条第一款第一项情形的，还应当换发排污许可证正本。  　　属于本办法第四十三条第一款规定情形的，排污许可证期限仍自原证书核发之日起计算；属于本办法第四十三条第二款情形的，变更后排污许可证期限自变更之日起计算。  　　属于本办法第四十三条第一款第一项情形的，核发环保部门应当自受理变更申请之日起十个工作日内作出变更决定；属于本办法第四十三条第一款规定的其他情形的，应当自受理变更申请之日起二十个工作日内作出变更许可决定。  　　第四十六条 排污单位需要延续依法取得的排污许可证的有效期的，应当在排污许可证届满三十个工作日前向原核发环保部门提出申请。  　　第四十七条 申请延续排污许可证的，应当提交下列材料：  　　（一）延续排污许可证申请；  　　（二）由排污单位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签字或者盖章的承诺书；  　　（三）排污许可证正本复印件；  　　（四）与延续排污许可事项有关的其他材料。  　　第四十八条 核发环保部门应当按照本办法第二十九条规定对延续申请材料进行审查，并自受理延续申请之日起二十个工作日内作出延续或者不予延续许可决定。  　　作出延续许可决定的，向排污单位发放加盖本行政机关印章的排污许可证，收回原排污许可证正本，同时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公告。  　　第四十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核发环保部门或者其上级行政机关，可以撤销排污许可证并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公告：  　　（一）超越法定职权核发排污许可证的；  　　（二）违反法定程序核发排污许可证的；  　　（三）核发环保部门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核发排污许可证的；  　　（四）对不具备申请资格或者不符合法定条件的申请人准予行政许可的；  　　（五）依法可以撤销排污许可证的其他情形。  　　第五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核发环保部门应当依法办理排污许可证的注销手续,并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公告：  　　（一）排污许可证有效期届满，未延续的；  　　（二）排污单位被依法终止的；  　　（三）应当注销的其他情形。  　　第五十一条 排污许可证发生遗失、损毁的，排污单位应当在三十个工作日内向核发环保部门申请补领排污许可证；遗失排污许可证的,在申请补领前应当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发布遗失声明；损毁排污许可证的,应当同时交回被损毁的排污许可证。  　　核发环保部门应当在收到补领申请后十个工作日内补发排污许可证, 并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上公告。  第六章　法律责任  　　第五十二条 环境保护主管部门在排污许可证受理、核发及监管执法中有下列行为之一的，由其上级行政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或者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符合受理条件但未依法受理申请的；  　　（二）对符合许可条件的不依法准予核发排污许可证或者未在法定时限内作出准予核发排污许可证决定的；  （三）对不符合许可条件的准予核发排污许可证或者超越法定职权核发排污许可证的；  　　（四）实施排污许可证管理时擅自收取费用的；  　　（五）未依法公开排污许可相关信息的；  　　（六）不依法履行监督职责或者监督不力，造成严重后果的；  　　（七）其他应当依法追究责任的情形。  　　第五十三条 排污单位隐瞒有关情况或者提供虚假材料申请行政许可的，核发环保部门不予受理或者不予行政许可，并给予警告。  　　第五十四条 违反本办法第四十三条规定，未及时申请变更排污许可证的；或者违反本办法第五十一条规定，未及时补办排污许可证的，由核发环保部门责令改正。  　　第五十五条 重点排污单位未依法公开或者不如实公开有关环境信息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公开，依法处以罚款，并予以公告。  　　第五十六条 违反本办法第三十四条，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依据《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的规定，责令改正，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依法责令停产整治：  　　（一）未按照规定对所排放的工业废气和有毒有害大气污染物、水污染物进行监测，或者未保存原始监测记录的；  　　（二）未按照规定安装大气污染物、水污染物自动监测设备，或者未按照规定与环境保护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或者未保证监测设备正常运行的。  　　第五十七条 排污单位存在以下无排污许可证排放污染物情形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依据《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的规定，责令改正或者责令限制生产、停产整治，并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关闭：  　　（一）依法应当申请排污许可证但未申请，或者申请后未取得排污许可证排放污染物的；  （二）排污许可证有效期限届满后未申请延续排污许可证，或者延续申请未经核发环保部门许可仍排放污染物的；  　　（三）被依法撤销排污许可证后仍排放污染物的；  　　（四）法律法规规定的其他情形。  　　第五十八条 排污单位存在以下违反排污许可证行为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依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的规定，责令改正或者责令限制生产、停产整治，并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关闭：  　　（一）超过排放标准或者超过重点大气污染物、重点水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排放水污染物、大气污染物的；  　　（二）通过偷排、篡改或者伪造监测数据、以逃避现场检查为目的的临时停产、非紧急情况下开启应急排放通道、不正常运行大气污染防治设施等逃避监管的方式排放大气污染物的；  　　（三）利用渗井、渗坑、裂隙、溶洞，私设暗管，篡改、伪造监测数据，或者不正常运行水污染防治设施等逃避监管的方式排放水污染物的；  　　（四）其他违反排污许可证规定排放污染物的。  　　第五十九条 排污单位违法排放大气污染物、水污染物，受到罚款处罚，被责令改正的，依法作出处罚决定的行政机关组织复查，发现其继续违法排放大气污染物、水污染物或者拒绝、阻挠复查的，作出处罚决定的行政机关可以自责令改正之日的次日起，依法按照原处罚数额按日连续处罚。  　　第六十条 排污单位发生本办法第三十五条第一款第二、三项或者第三十七条第四款第二项规定的异常情况，及时报告核发环保部门，且主动采取措施消除或者减轻违法行为危害后果的，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依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相关规定从轻处罚。  　　排污单位应当在相应季度执行报告或者月执行报告中记载本条第一款情况。  第七章 附 则  　　第六十一条 依照本办法首次发放排污许可证时，对于在本办法实施前已经投产、运营的排污单位，存在以下情形之一，排污单位承诺改正并提出改正方案的，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向其核发排污许可证，并在排污许可证中记载其存在的问题，规定其承诺改正内容和承诺改正期限：  　　（一）在本办法实施前的新建、改建、扩建建设项目不符合本办法第二十九条第一项条件；  　　（二）不符合本办法第二十九条第二项条件。  　　对于不符合本办法第二十九条第一项条件的排污单位，由核发环保部门依据《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第二十三条，责令限期改正，并处罚款。  　　对于不符合本办法第二十九条第二项条件的排污单位，由核发环保部门依据《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第九十九条或者《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第八十三条，责令改正或者责令限制生产、停产整治，并处罚款。  　　本条第二款、第三款规定的核发环保部门责令改正内容或者限制生产、停产整治内容，应当与本条第一款规定的排污许可证规定的改正内容一致；本条第二款、第三款规定的核发环保部门责令改正期限或者限制生产、停产整治期限，应当与本条第一款规定的排污许可证规定的改正期限的起止时间一致。  　　本条第一款规定的排污许可证规定的改正期限为三至六个月、最长不超过一年。  　　在改正期间或者限制生产、停产整治期间，排污单位应当按证排污，执行自行监测、台账记录和执行报告制度，核发环保部门应当按照排污许可证的规定加强监督检查。  　　第六十二条 本办法第六十一条第一款规定的排污许可证规定的改正期限到期，排污单位完成改正任务或者提前完成改正任务的，可以向核发环保部门申请变更排污许可证，核发环保部门应当按照本办法第五章规定对排污许可证进行变更。  　　本办法第六十一条第一款规定的排污许可证规定的改正期限到期，排污单位仍不符合许可条件的，由核发环保部门依据《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第九十九条或者《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第八十三条或者《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第二十三条的规定，提出建议报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关闭，并按照本办法第五十条规定注销排污许可证。  　　第六十三条 对于本办法实施前依据地方性法规核发的排污许可证，尚在有效期内的，原核发环保部门应当在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填报数据，获取排污许可证编码；已经到期的，排污单位应当按照本办法申请排污许可证。  　　第六十四条　本办法第十二条规定的排污许可证格式、第二十条规定的承诺书样本和本办法第二十六条规定的排污许可证申请表格式，由环境保护部制定。  　　第六十五条 本办法所称排污许可，是指环境保护主管部门根据排污单位的申请和承诺，通过发放排污许可证法律文书形式，依法依规规范和限制排污行为，明确环境管理要求，依据排污许可证对排污单位实施监管执法的环境管理制度。  　　第六十六条 本办法所称主要负责人是指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代表非法人单位行使职权的负责人。  　　第六十七条 涉及国家秘密的排污单位，其排污许可证的申请、受理、审核、发放、变更、延续、注销、撤销、遗失补办应当按照保密规定执行。  　　第六十八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